

[별표 1의2] <개정 1991.12.31>

폐질등급(제55조관련)

제 1 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2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3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 4 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5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 6 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다섯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 7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제 8 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 9 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 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거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기 어려운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1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못쓰게 된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15.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쓰게 된 사람
16.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 10 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기 어려운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 11 급

1. 두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7.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8.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두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제 12 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전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제 13 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 이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손가락뼈사이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제 14 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중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중 손가락뼈사이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중 한 발가락 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 위 표에 있어서의 시력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